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

“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(한국부동산원 ‘청약Home’)을 원칙으로 합니다.”

## ●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체크리스트

### 1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

- 3자녀 모두 만 19세 미만일 경우(태아포함) 신청 가능 합니다.

### 2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
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 예치금 충족

### 3 공동인증서 발급 필수

- 청약접수일 이전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.

## ●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용
배정 세대수	A-4블록 122세대 / A-9 블록 65세대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 : 공급세대수 10% 범위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, 입양아 포함)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.</li> <li>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(지역별 예치금액 이상)</li> <li>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.</li> <li>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(태아포함)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하며,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.</li> <li>임신의 경우 계약서를 제출시 출산관련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임신,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.(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.)</li> <li>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·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.</li> <li>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, (임신중에 있는 태아 포함) 단,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.</li> <li>이혼,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,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됨.</li> </ul>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%를 오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(경쟁이 있을 경우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,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가 미달시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)하며, 나머지 50%는 수도권 거주자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)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”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.</li> <li>‘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’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,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미성년 자녀수(태아나 입양아포함)가 많은 자.</li> <li>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.</li> </ul> </li> <li>※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및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등 관련 법령에 따름.</li> </ul>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

## ●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미성년 자녀수 (1)	40	5명 이상	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녀(태아나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</li> </ul>
		4명	35	
		3명	30	
영유아 자녀수 (2)	15	3명 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</li> </ul>
		2명	10	
		1명	5	
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</li> </ul>
		한부모 가족	5	
무주택 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(만 19세부터 기간 산정)</li> <li>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되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</li> </ul>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당해 시·도 거주 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</li> <li>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</li> </ul>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(6)	5	10년 이상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</li> </ul>
계	100			

## ● 유의사항

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

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

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
※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